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4실무작업반 논의 동향

법무부 국제법무과 법무관 공 보 영

I. 회의 개요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4실무작업반(이하 ‘작업반’)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국제규범 마련을 과제로, 「국경간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규범안」(Draft Provisions on the Use and Cross-border Recognition of Identity Management and Trust Services, 이하 ‘초안’)을 만들기 위해 2019년부터 회의를 진행하였다.

2022. 4. 4. ~ 8. 개최된 제63차 작업반 회의에서는 ‘초안’의 잔여 쟁점에 대한 검토를 계속 진행하고, 신규 의제로서 ‘AI 자

동화 계약’ 및 ‘데이터 거래’에 관한 논의를 개시하였다.

II. 주요 논의사항

가. ‘초안’ 관련 논의

(초안 제1조) 작업반은 초안 제1조 c호¹⁾에서 ‘electronic identification’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되, 초안 내 다른 조항에서 사용되고 있는 ‘electronic identification’의 의미²⁾를 명확히 하기 위해 초안 제5조³⁾와 제25조⁴⁾에 각 “the result of electronic identification” 문구를 추가하고, 초안

1)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Law: (c) “Electronic identification” [“Authentication”], in the context of identity management services, means a process used to achieve sufficient assurance in the binding between a person and an identity;

2) 초안 제1조 c호의 “electronic identification”은 신원관리의 2 단계 중 두 번째 단계를 의미하고, 다른 조항에서는 2 단계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어 서로 구별이 필요함

3) 원문은 다음과 같다.

제9조⁵⁾에는 “identity proofing and” 문구를 추가하였다.

(초안 제9조⁶⁾) 초안이 비신뢰적(non-reliable) 방법을 사용한 신원관리에 대해 법적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표명되어, 이를 기초로 같은 조 “method” 앞에 수식어 “reliable”을 추가하고, 끝부분에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을 삽입하여 초안 제9조와 제10조의 관계를 명확히 했다.

다만 비신뢰적 방법을 사용한 신원관리 서비스도 모델법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초

안 제10조 제1항 b호⁷⁾가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같은 호에 “deemed to be reliable if it is”를 삽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지지를 받지 못했고, 같은 호를 삭제하되 그 내용을 같은 조 제2항에서 신뢰성 판단 요소 중 하나로 두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같은 항의 판단 요소들은 우선 순위가 없는 예시적(non-exhaustive) 판단 기준이므로 사실상 규정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어느 쪽으로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초안 제25조⁸⁾)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Article 5. Legal recognition of identity management

Subject to article 2, paragraph 3, electronic identification shall not be denied legal effect, validity, enforceability or admissibility as evidence on the sole ground that:

- (a) The identity proofing and electronic identification are in electronic form; or
- (b) The identity management system is not designated pursuant to article 11.

4)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25. Cross-border recognition of electronic identification

1. Electronic identification provided outside [the enacting jurisdiction] shall have the same legal effect in [the enacting jurisdiction] as electronic identification provided in [the enacting jurisdiction] if the method used by the identity management system, identity management service or identity credential, as appropriate, offers at least an equivalent level of reliability.

5)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9. Identification of a person using identity management

Subject to article 2, paragraph 3, where the law requires the identification of a person for a particular purpose,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identification, that requirement is met with respect to identity management services if a method is used for the electronic identification of the person for that purpose.

6) 각주 5) 참조.

7)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10. Reliability requirements for identity management services

- 1. For the purposes of article 9, the method shall be:
- (b) Proven in fact to have fulfilled the function described in article 9.

신뢰성(at least an equivalent level of reliability)”의 기준이 국가 사법권 간의 비대칭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 또는 이상의 신뢰성(or higher level of reliability)”으로 대체하자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법적 확실성은 객관적 결정이 요구된다는 반론이 제기되어 최종적으로는 수정되지 않았다.

(용어 통일) △ 초안 제10조 제2항 d호와 제25조의 ‘level of reliability’를 ‘level of assurance’로 대체하면서 A/CN.9/WG.IV/WP.157 해설 내용을 주해(explanatory note)에 추가하기로 하고, △ 초안 제6조 d항 및 제14조 제1항 c호의 “subscriber” 뒤에 “신뢰 당사자(relying parties) 등”이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제3자(third parties)’의 정의를 주해에 추가하였다.

(향후 일정) 사무국은 이번 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초안 수정본을 각국 대표단과 관련 국제기구에 회람하고, 수정된 초안은 다가올 제55차 본회의(‘22. 6. 27.~ 7. 15.)에서 마무리 논의를 거쳐 모델법 문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나. 계약에서의 AI를 활용한 자동화

관련 주제 논의

(배경) AI와 자동화된 계약(automated contracting)의 개념을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AI와 자동화된 계약에 관한 법체계(legal framework)의 윤곽을 논의하기 위해 사무국이 작성한 회의자료(A/CN.9/WG.IV/WP.173)를 토대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개념) AI 시스템을 자동화 시스템의 하위 개념으로 보는 것에 대한 지지가 있었고, 작업 대상을 ‘AI 시스템’에서 ‘자율적(autonomous) 시스템’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지지가 있었다.

또한 ‘AI’ 자체를 정의하는 것은 어렵고, ‘AI 시스템’은 ‘예측불가능성’⁸⁾이라는 특징을 가진다는 견해에 대해 폭넓은 지지가 표명되었고, ‘자율성(autonomy)’이 제도의 설계나 운영에 대한 인간의 통제력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자동화된 계약) 자동화가 계약 체결 전(pre-contractual) 단계부터 계약 형성, 이행, 재협상, 해지에 이르기까지 계약 체결과정 전체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AI의 윤리적 이용과 관리에 대한 논의

8) 각주 4) 참조.

9) AI 시스템은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계(적) 학습(machine learning)’ 기법을 사용하여 ‘정해진(deterministic)’ 방식이 아닌 ‘적응(adaptive)’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또한 AI를 이용한 계약 체결(AI contracting)과 AI를 위한 계약(contracts for AI)이 구별되었고, AI 소프트웨어와 기존 소프트웨어의 차이가 강조되었으며, 온라인 플랫폼이 계약의 다양한 단계를 자동화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접근법) △ 기존 UNCITRAL 규범 및 문서들을 검토하여 자동화된 계약의 법적 처리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는 접근 방식, △ 자동화된 계약에 대해 새로운 법체계를 만드는 접근 방식이 제시되었다.

작업반은 우선 A/CN.9/WG.IV/WP/173 문서에 언급된 전자상거래에 관한 UNCITRAL 문서의 주요 원칙 및 조항을 비교하여 자동화된 계약의 법적 인정, 귀속 등 일부 쟁점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계약 체결전 단계부터 계약의 이행까지 계약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고, ‘책임’에 대한 공통의 법적 핵심요소(common legal core)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다. 데이터 거래(data transactions) 관련

(범위) 작업반은 논의 범위와 관련하여 데이터 거래 당사자의 권리·의무와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구별하고, 향후 작업은 데이터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호 문제는 제외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데이터 거래와 AI 자동화 계약이 긴밀하게 연관되지만 서로 다른 법적 쟁점을 가진다는 점에서 별도 논의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한편, 작업반은 ‘데이터’를 전자적 형태의 ‘정보(information)’로 확장하여 정의하면 데이터 거래는 ‘디지털 자산’의 거래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사무국은 이와 관련하여 현재 UNIDROIT에서 진행 중인 디지털 자산 관련 프로젝트와의 조율을 위해 UNIDROIT 사무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사례) 데이터 계약의 논의 주제 및 범위를 정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일본의 ‘AI·데이터 활용 계약지침’(계약지침)¹⁰⁾ 및 미국 법 연구소와 유럽 법 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데이터 경제를 위한 원칙’(ALI/ELI 원칙)¹¹⁾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10) https://www.meti.go.jp/english/press/2019/0404_001.html 참조.

일본이 소개한 ‘계약지침’은 데이터의 제공(provision type), 생성(generation type) 및 공유(sharing type) 3가지 유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미국·유럽 법 연구소의 ‘ALI/ELI 원칙’의 경우 데이터 생산에 기여하는 주체,¹²⁾ 이를 가공하는 주체,¹³⁾ 데이터를 받는 주체(recipient) 및 각 주체 간 데이터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중개자들(intermediary)¹⁴⁾로 나누어 데이터 계약 관련 쟁점을 제시했다.

(향후 계획) 향후 작업 범위에서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호 문제를 제외하는 것이 ‘개인정보’로 간주되는 데이터를 무시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견해가 제시되었고, 대부분의 데이터는 어떤 형태로든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아닌 데이터로 향후 작업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점도 강조되었다.

데이터 계약을 ‘데이터 제공 계약(contracts for data provision)’과 ‘데이터 처리 계약(data processing contracts)’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 광범위한 지지가 있었고, 이후 작업반의 논의는 우선 ‘데이터 제공 계약’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또한 계약

관계의 맥락에서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의 개념을 탐색하는 것에 대한 지지가 있었다.

III. 평가 및 시사점

1. ‘초안’ 관련

제55차 본회의를 앞두고 초안의 잔여 쟁점 대부분에 대해 합의가 도출되었으나, 신원관리 서비스 인증 방식의 신뢰성(reliable method)과 관련된 초안 제10조 제1항 b호 등 문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사실상 유일한 잔여 쟁점으로 남게 되었다.

위 잔여 쟁점에 대한 합의만 이루어지면 작업반이 모델법을 성안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6월말 개최될 제55차 본회의에서 위 잔여 쟁점에 대한 합의가 재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자동화 계약에서의 AI 활용’

관련

‘자동화된 계약에서의 AI 활용’은 이번

11) https://europeanlawinstitute.eu/fileadmin/user_upload/p_eli/Publications/ALI-ELI_Principles_for_a_Data_Economy_Final_Council_Draft.pdf 참조.

12) Data producer, Data assembler, Data enabler 등을 말한다.

13) Data controller, Data processor 등을 말한다.

14) Trustee, Escrowee, Marketplace 등을 말한다.

회기에서 처음 논의를 시작하는 만큼 향후 작업반의 논의 방향 및 논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논의가 주로 진행되었다. 향후 작업반 논의에 대비하여 기존 UNCITRAL 문서에서 참고할 만한 조항들에 대한 분석은 물론, 관련 국내 논의 상황 및 법령(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데이터 계약’ 관련

이번 회의에서 일본, 미국, EU 등이 AI, 데이터 규범 관련 경험을 공유하였듯이 우리도 국내에서 마련된 데이터 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차기 회의에서 소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논의 흐름상 향후 작업반은 ‘데이터 제공 계약’에 집중하여 논의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국내 논의 및 법령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우리 입장을 정립해나갈 필요가 있다.